

해외 사례

미국의 교육행정가: 교장 및 교육감의 자격 요건



김 태 연

네브라스카주립대
부교수

해외 교사의 자격 요건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교육행정가의 자격 요건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필자는 박사 과정 첫 학기 미국 수업에서 한국의 교장을 주제로 연구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장의 배경에 대해 놀라워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장이 50대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장으로서의 재임 기간은 짧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로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지만, 미국의 교육행정가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어떤 교장은 교장 경력만 30년 수행하였고 퇴직했고, 어떤 이는 교사 경험 없이 상담사 경력 5년만 가지고도 교장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미국의 교장과 교육감/교육장은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누가 교장이 되는가?

미국에서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은 주(State)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주로 학사 학위 취득 후 교사 자격을 얻어 일정 기간 교사 경력을 쌓고, 이후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 학위(M.Ed.) 또는 교장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교육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술 석사(M.A.)와 달리, 각 주에서 요구하는 행정가 자격에 준하는 수업을 제공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M.Ed. 프로그램은 대체로 교육행정 이론, 교육과정 및 교수 지도성, 교육법, 특수교육, 학

교 문화 및 학생 생활 지도, 교육 다양성, 커뮤니티 이해 등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이 주에서 요구하는 실습 학점을 채우도록 돕는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예비 자격증(Preliminary Credential)과 정식 자격증(Clear Credential)의 두 단계로 자격증 체계를 운영한다. 예비 자격증은 교장 또는 행정가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론 및 전문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학교 운영, 교육 과정 개발, 재정 및 인력 관리, 교육법 등 행정 업무의 기초에 관한 지식에 관한 것이다. 이 자격증은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된다. 유효한 교사 또는 관련 교육 분야 자격증 소지, 학사 학위, 5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 캘리포니아 기본 능력 시험(California Basic Skills Examination) 통과, 및 주에서 승인한 행정 서비스 예비 프로그램(Administrative Services Preliminary Program) 이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식 자격증은 예비 자격증 취득 후에 발급됩니다. 이 단계는 현장 실무 경험과 멘토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효한 예비 자격증 소지자가 (예비 자격증 발급 후 5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또는 동등한 사립학교에서 2년간 행정직(교장 또는 부교장) 으로 근무한 경험 증명해야 한다. 또한 주에서 승인한 Administrative Services Clear Induction Program을 이수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행정가들이 실제 직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리더십 역량을 심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멘토와 함께 개별 리더십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교장으로서의 영구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교육감/교육장이 되려면?

미국의 교육감(Superintendent)은 교육청(School District)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달리 교육구의 크기가 천차만별이지만 (예를 들어 학교가 3개인 교육구도 있다), 교육구의 수장을 superintendent (교육감으로 번역되나 교육장의 역할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수가 생각보다 많다. 미국의 교육감은 교육청 이사회(School Board)에 의해 고용되고 평가받는다. 이들의 주요 책임은 교육 정책 실행, 교육청 관리, 교육 개선 전략 수립, 지역사회 소통, 그리고 학교장 감독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교육감직은 교육 전문가들이 맡아왔지만, 일부 대규모 도시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인물들이 이 직책을 맡는 추세도 있다. 특히 대규모 교육구에서는 교육감을 최고경영자(CEO)와 같이 인식하며, 교육 전문성뿐 아니라 비전 있는 리더십, 재무 계획,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기를 원한다. 하지만 Nash 및 Grogan(2022)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 맡았던 주요 직책은 교사(94.99%), 교장(83.17%), 부교육감(35.14%) 등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교육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자격도 주마다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장 또는 다른 교육행정가로서 경력을 쌓고, 주에서 요구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교육학 박사(Ed.D.) 학위는 교육감 또는 교육청 수준의 행정가 자격 취득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교육학 박사 학위 프로그램은 주로 교장이나 교사 리더들이 지원하며, 교육구 수준의 정책 결정 및 실행, 주 정부 및 연방정부와의 의사소통, 교육의 정치적 관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며, 현장에 기반한 박사 논문을 졸업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교육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교육 리더십 관련 석사 학위, 유효한 캘리포니아 행정 자격증, 그리고 교장 또는 교육청 수준의 상당한 행정 경험이 포함된다. 최근 캘리포니아 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유효한 학교 행정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등 주요 행정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순전히 사무적인 권한만 갖는 경우는 제외).



참고문헌

나민주, 박상완, 박수정, 안준길, 김태연, 이수경, & 장우천. (2024). 미국 Superintendent, 프랑스 Recteur, 한국 교육감 제도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Grogan, M., & Nash, A. M. (2021). Superintendents and the intersections of race, gender, and district composition. The American superintendent 2020 decennial study, 19.

